

# 韓國圖書館協會 公共圖書館部會規程

## 第1條 (設置)

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(이하 圖協이라 稱함)定款 第26條의 規程에 따른 公共圖書館部會(이하 部會라 稱함)의 設置는 이 規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務所는 會長 在任圖書館에 둔다.

## 第2條 (目的)

部會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調查研究 및 事業遂行을 目的으로 한다.

## 第3條 (事業)

部會는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.

1.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調查研究
2. 研究物의 編纂 및 刊行
3.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其他 事業

## 第4條 (會員)

部會員은 다음과 같다.

1. 公共圖書館
2. 圖協會員으로서 公共圖書館에 勤務하는 者
3. 圖協會員으로서 部會員이 되기를 希望하는 者
4.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.

但,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常任研究委員會에서 定한다.

## 第5條 (任員)

1. 會長 1名
2. 副會長 1名
3. 常任研究委員 15名以內
4. 幹事 1名

## 第6條 (任務)

部會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.

1. 會長은 部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한다.
2.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.
3. 幹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部會의 事務를 處理한다.

## 第7條 (任員選舉)

任員의 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.

1. 會長 副會長은 常任研究委員會에서 選出한다.
2. 常任研究委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.
3. 幹事는 會長이 委嘱한다.

## 第8條 (任期)

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. 但, 任員中 缺員이 생길 때에는 常任研究委員會에서 補選하되 補選者의 任期는 前任者の 殘餘期間으로 한다.

## 第9條 (會議)

會議는 部會總會(이하 總會라 함)와 常任研究委員會의 2種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.

1. 總會는 年 1回 開催한다.
2. 常任研究委員會의 議決이 있거나 또는 委員 3分之1以上이 要求할 때
3. 會員 10分之1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 때

## 第10條 (總會의 機能)

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.

1. 事業報告
2. 規程의 變更
3. 其他 重要한 事項의 議決

## 第11條 (常任研究委員會의 機能)

1. 第3條에 明示된 事業의 審議決定
2.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審議決定

## 第12條 (補助金 支給)

部會는 公共圖書館이 納付한 會費中 그一部를 事業補助金으로 支給 받을 수 있다.

## 第13條 (補助金 申請)

部會에서 補助金을 申請하고자 할 때에는 補助金 申請書와 事業計劃書를 添附하여 事業施行豫定日로 부터 30日 以前에 圖協會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.

## 第14條 (改定)

이 規定은 公共圖書館部會를 거쳐 圖協 理事會에서 改定한다.

## 附 則

本規程은 圖協 理事會가 議決한 1968年 6月 21日 부터 施行한다.